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81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 : 민병덕·김원이·김성환

강준현 • 최민희 • 이기헌

임미애·박수현·허 영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특정 재벌 대기업이 오너 일가의 더 쉬운 지분 세습을 위해 우량한 기업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억누르거나 일반주주의 손해를 초 래하는 주식 분할, 불공정 인수합병을 감행하였고, 이런 행태가 우리 주식 시장의 가치 평가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이사와 이사회가 특정 주주나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상법상 이사는 회사와 "위임 관계"를 맺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주주와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충실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는 논리적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현행법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더해,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의 투명한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 개선을 추구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382조의 3).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로, "會社를"을 "회사를"로, "職務를 忠實하게"를 "직무를 충실하게"로, "한다"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와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로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와
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	<u>공정의무)</u> 이사는 법령과 정관
라 <u>會社를</u> 위하여 그 <u>職務를</u>	<u>의 규정에회사를</u>
<u>忠實하게</u> 수행하여야 <u>한다</u> .	<u>직무를 충실하게</u>
	<u>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u>
	있어 특정 주주와 그 이해관계
	인의 이익이 아닌 총주주의 이
	<u>익을 공정하게 대변하고 보호</u>
	<u>하여야 한다</u> .